



도면에 저작권이 미친다고 해서, 해당 도면으로 만든 기계에도 저작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최푸름 | University of Debrecen, LL.M

배경

- 원고는 파이프 회사이고 피고는 캐나다의 선박 업체임.
- 원고 회사의 한 임직원은 퇴사 당시, 원고인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밀 도면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었음. 그는 퇴사 후, 제3자인 타 파이프 업체에게 도면을 넘겼음.
- 파이프 업체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을 습득하고 '실질적 부분'을 베껴 파이프 밴딩 기계를 설계함.

사실 관계

- 원고는 타 파이프 업체 측에 연락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자신임을 밝힘. 이에 제3자인 파이프 업체는 파이프 밴딩 기계 생산을 중단함.
- 그러나 업체는 미완성된 파이프 밴딩 머신에 대한 대금을 받고 해당 기계를 선박 업체(이하, '피고')에 납품함. 피고는 이를 렌탈하여 영리적 이득을 취함.

-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만든 기계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냄. 또한,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함.

관련 법령과 판례법

- 캐나다 저작권법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미술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실질적인 부분을 이용하여 공중의 필요에 제공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짐.
- 캐나다 저작권법 제34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는 가처분, 손해배상, 부당 이득 반환, 침해 물품 인도 등 모든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명시함.
- CCH Canadian Ltd v Law Society of Upper Canada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어떤 도면을 똑같이 복제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 개념이 아님. 즉, 도면을 기초로 한 기계가 일반 관용적인 사용 방법을 넘어 도면의 내용보다 더 나은 독창성을 겸비한 기계라면 이는 도면의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을 수 있음.
- Lainco Inc c Commission Scolaire Des Bois-Francs 판례는 원고의 설계도를 이용하여 스포츠 내부 시설을 설계한 피고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림.

법원의 판결

- 법원은 원고가 파이프 밴딩 머신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 첫 번째로, 공업용 기계는 캐나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이 아님.
- 두 번째로, 법원은 상기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공업용 기계는 원고의 도면을 있는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닌, 그 나름대로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함. 즉, 일반 관

용적인 사용 방법을 넘어 더 나은 독창성을 지닌 기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저작물’을 기초로 설계되었더라도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님.

- 또한, Lainco 판례를 상기 사안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분야가 서로 상이해서임. Lainco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저작물은 건축 저작물이었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공업용 기계이기 때문에, 법원은 Lainco 판례를 이에 적용하지 않았음.
-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렌탈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용되지 않음.

시사점

- 상기 판례는 저작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단순히 후자가 전자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법적 견해를 밝힘으로써, 추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도면 관련 저작권 분쟁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참고 자료

<https://www.canlii.org/en/ab/abqb/doc/2019/2019abqb983/2019abqb983.html>



사법재판소 법무관, 인라인 링크는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희영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어떤 웹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자유로이 제공되고 있는 저작물을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프레임 기술을 사용하여 임베딩하는 것이 공중전달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무관은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활성화하여 임베딩하는 것은 공중전달이 아니지만, 링크의 활성화 없이 자동 링크를 이용하여 저작물이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임베딩하는 것(인라인 링크)은 공중전달이며, 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

사실 관계

- 원고는 독일 디지털 도서관(DDB)의 운영자인 독일 프로이센 문화유산 재단이며, 피고는 독일 미술 저작물 관련 관리단체(VG Bild-Kunst)임.
- 원고는 독일 문화 및 학술 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문화 및 학술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¹⁾
- 원고는 문화 및 학술 기관들의 웹 포털에 저장되어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링크를 설정함. 원고는 이들 웹 포털의 디지털 콘텐츠의 섬네일을

1) <https://www.deutsche-digitale-bibliothek.de/>

자신의 서버에 저장함. 이용자들이 검색어를 입력하여 클릭하면 검색 결과 목록에 440x330 픽셀 크기의 썸네일이 나타남. 이 썸네일을 다시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고 최대 800x600 픽셀 크기의 썸네일이 나타나며, 이 창 아래에는 해당 콘텐츠 제공자의 웹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설정되어 있음.

- 이용자가 이 링크를 클릭하면(활성화하면) 디지털 콘텐츠가 있는 문화 및 학술 기관들의 웹 포털로 이동함. 이 링크는 이들 웹 포털의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단순 링크) 해당 저작물이 직접 연결됨(딥 링크). 원고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서 이들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음.
- 피고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저작물이 썸네일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함.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계약 대상인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제삼자가 원고의 포털에서 노출되는 썸네일을 프레임 방식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원고가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함.
- 저작권관리단체법(VGG)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한 조건'으로 저작권관리단체는 이용권을 허락할 의무가 있음(제34조 제1항의 계약강제).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그러한 계약조건은 적정한 조건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가 이러한 기술적 조치의 이행을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락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며 제삼자가 이용 허락 없이 프레임 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공중에게 저작물을 접근시키는 것이어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항변함.

1심 및 항소심 법원의 판결

- 베를린 지방법원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법적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법원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²⁾
- 베를린 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를 요청하는 것은 비례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저작권관리단체가 저작물의 이용권을 허락하면서 이용자의 프레임 방식을 통한 섬네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요건으로 제시한다면, 이것은 저작권관리단체법이 정한 이용권 허락에 필요한 적절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함.³⁾

연방대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

-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프레임 방식의 임베딩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의 해석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다음의 질문을 선결 판결로 요청함.⁴⁾
- 권리자의 동의로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을 프레임 방식으로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임베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프레임 링크를 방지하는 권리자의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 이 지침의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

2) LG Berlin, Urteil vom 25.07.2017 – 15 O 251/16.

3) KG Berlin, Urteil vom 18.06.2018 – 24 U 146/17.

4) BGH, Beschluss vom 25.04.2019 – I ZR 113/18.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 법무관은 프레임 방식을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임베딩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판단함.⁵⁾ 하나는 링크를 클릭(활성화)하여 타인의 저작물이 프레임을 통하여 노출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추가적인 행위 없이 자동으로 타인의 저작물이 프레임을 통하여 노출되는 방법임. 법무관은 후자를 ‘인라인 링크’로 파악함.
-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어떤 웹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자유로이 제공되고 있는 저작물을,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프레임 기술을 사용하여 링크를 활성화하여 임베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음. 저작권자가 이 저작물을 최초로 접근시켰을 때 이러한 허락을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공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 또한 이러한 임베딩은 프레임 방식으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발생한 경우도 포함함. 이러한 방식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에서 이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임. 따라서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프레임 방식은 여기에 해당됨.
- 이에 반해서 자동 링크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임베딩하는 경우(인라인 링크)에는 이용자의 추가적인 행위없이 자동으로 저작물이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노출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함. 이와 같이 자동 링크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대상을 포함하는 경우, 기술적·기능적인 면에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존재함. 이 경우 공중은 저작권자가 최초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중으로 인정됨.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동 링크는 제삼자의 웹사이트의 구성요소로서 인식되므로 원래 웹사이트의 저작물과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임베딩되어 있는 저작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권리자의 허락으로 어떤 웹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자유로이 접근되고 있는 저

5) CJEU, Opinion of Advocate General, 10.09.2020, C-392/19.

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의 추가 행위 없이 자동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임베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정보사회 저작권지침 제6조가 규정한 유효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됨.

평가 및 전망

- 지금까지 유럽사법재판소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어떤 웹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자유로이 접근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 다른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임.
- 하지만 프레임 방식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임베딩하는 인라인 링크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판단하지 않았음. 법무관은 이에 대해서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법무관의 견해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에서 추가적인 행위없이 타인의 유튜브 동영상을 자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공중전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법재판소가 이를 수용할지 기대됨.

참고 자료

<https://bit.ly/2HHswWY>

<https://bit.ly/3oDsb8E>

<https://bit.ly/3e8a71B>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자는 저작물이 아니다

박성진 | 남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응용미술저작물인 의자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프랑스 대법원은 베른협약의 기본원칙인 상호주의에 따라 이 사건 의자의 최초공표국인 미국의 법리로 보았을 때, 해당 의자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이에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미국의 법리인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 사건 의자는 저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프랑스에서도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함.

사실관계

- 가구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미국 법인인 원고는 가구 디자이너로부터 그가 디자인한 의자 및 안락의자(이하, “이 사건 의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함.
 - 이 디자이너는 핀란드 출생이기는 하나, 1940년부터는 미국 국적자로서 이 사건 의자들을 미국에서 처음 공표함.
- 가구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프랑스 법인인 피고는 이 사건 의자가 띠는 특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띠는 의자 80점을 프랑스의 한 쇼장(show場)에 진열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불공정경쟁행위 및 기생행위(parasitisme)에 해당한다며 2013년 4월 30일, 파리 지방법원에 압류 및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쟁점

- 실용 미술품이 저작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지 판단하기 위한 미국 판례법 이론인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자를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하급심의 판단

- 파리 지방법원¹⁾은 2015년 1월 16일에 원고의 의자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파리 고등법원에 상소함²⁾.
 - 이 법원은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 이 사건 의자의 보호 가능성을 판단함.
 - 그 결과, 이 사건 의자의 받침대의 형태나 색깔 등과 같은 세부적인 특징들은 의자의 실용적인 목적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의자의 전체적인 형태 (forme intégrale)는 그 기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함.
 - 더구나 이 사건 의자에 대해 받은 특허명세서에도, 이 형태가 이용자의 체중을 가장 잘 분산시킬 수 있다는 실용적 면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의자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도록 함.

1)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aris 3ème Chambre 2ème Section 16 Janvier 2015 n° 13/07066.

2) Cour d'appel Paris pôle 5, Chambre 2, 13 Avril 2018, n° 15/05833.

대법원의 판결

- 2020년 10월 7일, 프랑스 대법원³⁾은 이 사건의 준거법은 이 사건 의자가 처음으로 공표된 국가인 미국의 법률임. 이에 따라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 이 사건 의자의 보호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 끝이어서 이 사건 의자 받침대의 형태와 그 윗부분의 형태 모두 미적인 요소가 있음은 인정함.
- 그러나 제작의 측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의자의 형태는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내구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가장 편안한 구조를 찾은 결과일 뿐이라고 분석함.
- 즉, 이 사건 의자는 미국 저작권 판례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의해서도 이 사건 의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임.

평가

- 베른협약 제2조 제7항은 응용미술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써 보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그런데 이 조항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저작권법과 디자인법 중 어느 법으로 보호할 것인지 여부 및 중첩보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음.
 - 다만, 이 사건 법원은 베른협약이 상호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 의자를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으로써 보호할 것인지 여부를 살핌.
 - 베른협약에 따른 상호주의에 비추어보건대, 이 사건 응용미술저작물인 의자가

3) Cour de cassation, première Chambre Civile, 7 Octobre 2020, n° 18-19.441.

최초로 공표된 미국의 법리에 따라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프랑스의 지식재산
권법에 따라서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임.



자스락, 2020년도 상반기 보고서 공개

권용수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자스락이 공개한 '2020년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 징수액은 2019년 동기 대비 2.9% 감소하였지만, 분배액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의 징수액이 반영된 결과로 2019년 동기 대비 9.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개요

- 자스락은 2020년 10월 20일에 징수액과 분배액, 주요 분야의 징수 실적, 법적 조치 실시 건수 등을 정리한 2020년도 상반기(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보고서를 작성·발표함.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020년 상반기 징수액은 2019년 동기 대비 15억 5,000만 엔 감소한 514억 2,000만 엔(한화 약 5,568억 원)을 기록함.
 -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이벤트가 중지되거나 연기되어, 음악 이용 기회가 감소하고, 인터랙티브 전송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징수액이 감소한 결과임.
 - 2020년 제1사분기 징수액은 2019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의 영향

- 으로 제2사분기 징수액이 2019년도 동기 대비 23억 7,000만 엔이나 감소하였음.
- 징수액을 보면 연주 분야 징수액이 2019년 동기 127.6억 엔에서 83.3억 엔(한화 약 900억 원)으로 가장 큰 감소 폭(34.7%)을 보인 한편, 인터랙티브 전송 징수액은 같은 기간 89.2억 엔에서 155.7억 엔(한화 약 1,680억 원)으로 무려 74.4%나 증가함.
- 2020년 상반기 분배액은 2019년 동기 대비 53억 1,000만 엔 증가한 605억 4,000만 엔(한화 약 6,54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함.
- 제1사분기 인터랙티브 전송 관련 징수액 증가가 제2사분기 분배액에 반영됨과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도 하반기 징수액을 반영한 분야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분배액이 증가함.
 - 분배액을 보면 디지털 오디오 디스크 분야 분배액이 2019년 동기 52.1억 엔에서 38.1억 엔(한화 약 410억 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26.9%)한 한편, 인터랙티브 전송 분배액은 같은 기간 95.4억 엔에서 177.5억 엔(한화 약 1,918억 원)으로 무려 86.0%나 증가함.
- 2020년 상반기 경상수익은 2019년도 동기 대비 2,000만 엔 감소한 72억 엔(한화 약 778억 원)을 기록함.
- 이는 인터랙티브 전송 관련 관리 수수료의 수입이 2019년 동기 대비 3억 5,000만 엔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주와 녹음과 관련한 관리 수수료의 수입이 각각 2억 8,000만 엔, 9,000만 엔 감소한 것과 더불어, 2020년도 회비 청구를 정지함에 따른 결과임.
- 2020년 상반기 경상비용은 2019년 동기 대비 5,000만 엔 감소한 56억 9,000만 엔(한화 약 615억 원)을 기록함.
-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사교클럽, 가라오케, 이벤트 등에 관계된 독촉을 정지한 것 또는 해외 출장을 중지한 것 등에 의한 결과임.
- 자스락은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 되도록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9년 동기 대비 법적 조치 실시 건수가 대폭 감소함.

- 예컨대, 연주 분야에서의 법적 조치는 2019년 상반기 789건에서, 2020년 상반기 30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 또한, 녹음·출판 관련, 공중송신 관련 형사 고소 건도 각각 1건에 불과하였음.

전망

- 코로나19 감염증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20년 하반기 징수액이나 분배액 감소가 예상됨.
 - 2020년 상반기 분배액이 증가하였으나 제2사분기 증가가 제1사분기 증가보다 줄었고, 제3사분기 이후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어 2020년도 전체 분배액은 감소가 예상됨.
- 자스락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자 분배를 지체없이 실시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 사항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비용 지출 절감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힘.

참고 자료

https://www.jasrac.or.jp/release/20/10_2.html

https://www.jasrac.or.jp/profile/disclose/pdf/2020/2020_report_02.pdf



지식재산고등법원, BL 동인 작품의 무단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권용수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BL 동인 작품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2차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적 부분에 있어 미풍양속에 반한다는 점이 지적된 사건에서, 해당 작품이 심히 외설적이라는 근거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건의 개요

- 피고 회사는 책·DVD·비디오·게임용 소프트웨어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BL 동인 작품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광고 수익을 올림.
- 원고는 피고 회사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09조 및 저작권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 도쿄지방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금 219만 2215엔(한화 약 2,4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음.
 - 도쿄지방법원은 배상액을 각 작품의 추정 페이지 부 수에 1권당 이익액을 곱해 산출하였음.

- 그러나 원고와 피고 회사 모두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함.
 - 피고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고 손해배상금 219만 2215엔의 지급이 명해진 것에 불복하였고, 원고는 손해배상금을 1,000만 엔(한화 약 1억 8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소하였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쟁점은 문제가 된 BL 동인 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임.
-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이를 창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논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BL 동인 작품을 무단 공개해 광고 수익을 올린 자신의 행위가 문제없다고 주장함.
 - 이 사건 BL 동인 작품은 원저작물의 복제권, 변안권 및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위법한 2차적 저작물로 원저작물을 모욕함과 함께 미풍양속에 반하는 허용할 수 없는 변용을 가하고 있음.
 - 이를 생각하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작품을 용인하고, 위법한 동인지에 의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조장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얻는 이익을 적법한 이익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또한, 위법한 2차적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고방식과 판단이 있으나, 이러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 저작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해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이 사건 BL 동인 작품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그 창작적 부분이 미풍양속에 반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BL 동인 작품에 대한 저작권 행사는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됨.

-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BL 동인 작품이 심히 외설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미풍양속에 위반된다고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평가

- 이 사건에서 법원은 2차적 저작물에 내재한 외설성과 저작권 보호 여부 등이 상호 무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BL 동인 작품의 외설성을 가지고는 저작권 침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작품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부정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참고 자료

<https://news.yahoo.co.jp/byline/kuriharakiyoshi/20201008-00201963/>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748/089748_hanrei.pdf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638/089638_hanrei.pdf

<https://nlab.itmedia.co.jp/nl/articles/2002/14/news137.html>



하북성고등법원, 독창적인 폰트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함

박다현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피고들이 원고의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폰트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폰트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원고 ‘북대방정전자유한공사’는 본안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2000년 8월 중국판권보호센터에 본 사건 폰트 <방정천체계열(方正倩体系列)>을 등록함 (등록번호 : 2008-F-011015). 피고1은 원고의 폰트를 제품 포장지에 사용한 ‘계림식품유한공사’이고, 피고2는 피고1의 제품을 판매한 ‘영휘마트’임.
- 원고는 석가장 장안구에 위치한 영휘마트에서 ‘오곡 잡곡 영양 오토밀’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의 폰트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폰트 9가지를 사용한 것임을 발견함.
- 2017년 4월, 원고는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중단 및 경제적 손해배상액 10만 위안을 주장하며 석가장 법원에 판결을 요청함.
- 피고1은 폰트 자체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이 아니며, 프로그램이 폰트를 생성하는

행위는 창작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해당 제품에 사용한 폰트는 디자인 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폰트 디자인에 대한 침해는 없다고 주장함. 피고2는 합법적인 정규 업체로부터 제품을 사들인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법원판결

- 1심 석가장 법원(石家庄中院)은 본안 폰트는 원고에 의해 각색된 독특한 폰트로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의 특징 및 단문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1에게 9자(“五”“谷”“粗”“粮”“营”“养”“燕”“麦”“片”) 사용을 중지하고 피고2에게 9자에 대한 5만 위안의 경제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함. 이에 피고들은 불복하여 항소함.
- 2심 하북성고등인민법원(河北省高级人民法院)은 1심 판결의 견해를 유지하여 피고1의 제품 포장에서 9개의 폰트 사용중단 및 5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고, 피고2는 피고1의 포장이 사용된 제품 판매를 즉각 중단함.
 - 원고의 폰트가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획으로 표현되는 한자 특성상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폰트는 한자의 기본 획에 굵고 짧은 획, 획의 꺾임 등 획과 획 사이에 예술적 표현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에 해당된다고 봄.
 - 또한, 피고들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원고의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사안이었는지를 판단했을 때, 법원은 원고의 폰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무료 폰트나 합법적인 유료 폰트를 사용하는 등 다른 방안이 있었다고 봄. 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폰트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

의의

- 중국 내에서도 영화 포스터, 광고 등 폰트 저작권 분쟁이 과열되면서 폰트가 저작권 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음. 본 안 판결은 독창적으로 표현된 폰트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폰트가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인지의 여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원고의 독창적인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였는지 등을 법원이 침해 판단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참고 자료

<http://ip.people.com.cn/n1/2018/0926/c179663-30314295.html>



국가판권국, “2019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산업 발전 보고서(《2019年中国网络版权产业发展报告》)” 발표

서 새 남(XU SAINAN) | 베이징 권리침해 및 위조 방지 연맹(CASSA) 지식재산권연구원 책임 연구원

2020년 9월 16일에 국가판권국이 주최하는 “2020 중국 온라인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대회(2020中国网络版权保护与发展大会)”가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국가판권국 온라인 저작권 산업연구기지(国家版权局网络版权产业研究基地)가 “2019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산업 발전보고서(《2019年中国网络版权产业发展报告》)”를 발표하였음.

보고서 주요 내용

-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온라인 저작권 산업 시장규모는 9,584억 2,000만 위안(한화 약 162조 3,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하였음. 수익모델은 주로 저작물 이용료, 저작권운영(저작권 매니지먼트), 광고 수입의 세 가지 종류가 있음. 광고 및 기타 수입은 5,057억 위안(한화 약 85조 6,000억 원)이며, 전체의 52.7%를 차지하고,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입은 4,444억 위안(한화 약 75조 3,000억 원)에 달아 46.4%를 차지하고, 저작권운영(저작권 매니지먼트) 수입은 83.2억 위안(한화 약 1조 4,000억 원)으로 전체의 0.9%를 차지함.
- 시장 구조를 보면, 2019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산업의 핵심 업태가 안정화되면서 산업 구조가 더욱 다양해지고, 수익구조가 점차 모델화되면서 새로운 업태의 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음. 온라인 뉴스미디어와 온라인 게임은 여전히 중국 온라인 저

작권 산업의 핵심 업태로 시장 규모를 합쳐 전체의 63.7%를 차지하고 있음. 온라인 동영상 업계는 새로운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장편 동영상 콘텐츠(애니메이션 제외)와 단편 영상 및 온라인 생방송은 전체 산업 비중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 보고서는 디지털 리딩(Digital reading), 온라인 장편 동영상, 온라인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온라인 음악, 온라인 뉴스미디어, 온라인 생방송, 온라인 단편 영상, 가상 현실 및 증강현실과 같은 9가지 업종별 산업의 발전 상황과 포인트를 정리하여 요약하였음. 나아가 2019년 중국의 온라인 저작권 산업은 적극적으로 업태 혁신과 구조조정, 기술 배치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안정을 보이며,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켜 산업 구조를 더욱 합리화하고 있음.

시사점

- 중국 온라인 저작권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는 반면에, 불법 이용자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저작권 침해 사건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하지만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드물고, 저작권 침해소송에 의해 받은 배상금은 실제 손실이나 소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온라인 저작권 시장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관리, 각 부서 및 기업 등 협력에 의한 관리,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 기술에 의한 관리 원칙준수와 함께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참고 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421425.html>

<http://www.chyxx.com/industry/202010/899852.html>



2020년 저작권법 개정안 내각 승인 통과

최재원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태국은 198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가입했음. 2018년, 태국의 국회입법회의는 태국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orld Copyright Treaty, WCT) 가입안을 비준함. 태국은 WCT의 서명자로서 WCT를 준수하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식재산부(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Thailand, DIP)는 WCT를 준수하기 위해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과 함께 저작권자가 실무적으로 적용하거나 의존하기 어려운 것으로 입증된 일부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태국은 2020년 9월 29일 저작권 개정 초안을 승인하였는데, 개정 초안에 포함된 조항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음. 승인된 저작권법 개정 초안은 태국 하원에 회부되기 전, 심의를 위해 현재 하원 조정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임(2020년 11월 12일 기준).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와 ‘서비스 사용자’의 정의가 추가됨.
 -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 임시 컴퓨터 데이터 저장 서비스 제공자, 컴퓨터 저장 서비스 제공자, 컴퓨터 데이터 소스 검색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함.
 - 그러한 사용자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자로 포함하는 ‘서비스 사용자’의 정의가 추가됨.
 - 태국 저작권법에서 기술적 보호 조치의 정의는, 본 법에 따라 저작권자 또는 저

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저작물이나 공연 등에 대한 녹화의 접근권과 통제권을 추가함.

○ 사진저작권 보호기간

- 사진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기간을 확대함.

○ 시청각, 영화, 녹음, 방송저작물 보호기간

- 제작 후 50년으로 확대함.

- 만약 그러한 작품이 해당 기간 내에 공표되었다면,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초 공표된 날로부터 50년까지임.

○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에 대한 책임

- 서비스 제공자는 전송의 발신자가 될 수 없으며 수신자를 선택할 수 없고, 컴퓨터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음.

-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 프로세스를 통해 컴퓨터 데이터를 전송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제됨.

○ 컴퓨터 데이터 저장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 중인 시스템이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저장된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를 알 수 없거나 알 이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컴퓨터 데이터 소스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시스템이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해된 컴퓨터 데이터가 있음을 알 수 없거나, 알 이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발생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해당 데이터의 출처를 제거하고 연결을 끊어야 함.

○ 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실행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동을 기술적 보호 조치 침해로 간주함
- 컴퓨터 소유자, 컴퓨터 시스템 소유자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특정 목적의 수행을 위해 컴퓨터 보안 시스템의 검사를 진행할 경우 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됨.
- 연구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또는 그 복사본을 합법적으로 입수하고, 저작권 소유자 또는 국가 보안에 대한 허가를 구하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경우에도 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됨.

○ 제32조의3에 따른 ‘통지와 삭제(notice&take down)’ 조항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제한’으로 대체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중개·캐싱·호스팅·정보 검색 도구 등의 서비스 제공자는 통지와 삭제(notice&take down)이행 여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됨.

○ 저작권 소유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지서를 발행함.

시시점

○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반출 절차를 보다 실용적으로 수정함.

- 사진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 시청각·영화·녹음·방송저작물의 보호 강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에 대한 저작권 책임을 강화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개정된 저작권법 발효 이후, 인터넷상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개정된 법안은 태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현대화하였으며, WCT에 가입하기 위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 자료

<https://bit.ly/3kBed4D>

<https://bit.ly/35EyrUR>

<https://bit.ly/2TyI15T>

<https://bit.ly/31P6zvX>

<https://bit.ly/3njScs9>